

학칙개정 사유서

본교 학칙 제 17장 71조(학칙 제·개정안의 공고, 의견제출, 심의, 공포) 및 고등교육법 제6조(학교규칙)에 의해 학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.

제17장 학칙 제·개정절차

- 제71조(학칙 제·개정안의 공고, 의견제출, 심의, 공포)** ① 학칙을 제·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·개정안의 취지,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학칙 제·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상으로 한다.
- ③ 우리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·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반 학칙의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공포 및 시행한다.

제6조(학교규칙) ① 학교의 장(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)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.

② 학칙의 기재사항,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[대통령령](#)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7. 21.]

2019년 3월 1일

청 강 문 화 산 업 대 학 교 총 장